

규제연구 제18권 제2호 2009년 12월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AHP 기법의 적용-

김관보*, 김명수**, 채경진***

본 연구는 수직적·종속적 거래의 특성을 지닌 하도급거래 공정성 추세를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축하고 공정성지수를 산정하는 시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크게 3가지, 즉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성할 평가부문(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의 추출 근거인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상생협약 내용 등을 분석하여 분류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과 연계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안)을 도출한 후 평가틀에 포함된 평가부문(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를 위해 계층분석방법(AHP)을 실시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은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 및 22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3가지 평

* 제1저자, 가톨릭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e-mail: kwanbo@catholic.ac.kr)

** 가톨릭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e-mail: mskimcuk@catholic.ac.kr)

*** 가톨릭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e-mail: hotdogg@catholic.ac.kr)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주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2009)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접수일: 11/12, 게재확정일: 11/27

가항목과 11개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결과 AHP 1차 수준인 평가항목 간의 비교에서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이,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간의 비교분석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은 모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가중치 및 전체 우선순위 분석 결과, 1순위에서 3순위까지(하도급대금지급→부담감액→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는 모든 업종이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적용하기 위한 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및 종합 공정성 지수(CFI)를 산정하였다.

핵심용어: 공정성,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AHP, 공정성 지수, 상생협력

I. 서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선진한국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인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도입으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마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 3대 가이드라인 제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등의 제도들을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과 함께 1999년 이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여 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현장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하도급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에 실시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는 평가도구 및 측정방법, 평가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성을 지닌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도한 평가시스템 및 기존 문헌 고찰에서 하도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개념 및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범적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지닌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은 신뢰성·타당성이 높은

공정성 지표 개발 및 측정방법,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대상 및 범위 설정, 공정성을 향한 하도급거래 대·중소기업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구조를 담은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공정성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 형태의 지표가 제시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직적·종속적 거래의 특성을 지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공정성의 추세를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이며 예측가능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개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범위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공정성 개념 고찰하에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그러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의 분류하에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성할 평가부문 및 세부 평가지표의 추출 근거인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상생협약 내용 등을 분석하여 각 부문 및 세부평가지표와 분류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연계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도출한 후 평가 모델에 포함된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를 위해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측정지표(향후 공정성 조사 설문조사의 지표) 및 하도급거래 공정성 지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의 개략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II. 하도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하도급거래의 의의

(1) 하도급거래의 개념

Oliver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거래(transaction)는 재화나 서비스(용역)가 기술적으로 분리된 두 영역에 걸쳐서 이전될 경우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Williamson, 1985:1). 거래비용은 사전적 거래비용과 사후적 거래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사전적 거래비용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이며 사후적 거래비용은 계약체결 이후 거래를 공정하게 충실히 이행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하도급거래 공정성에서의 하도급거래는 이러한 거래비용 개념상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도급관계의 유용한 분석틀인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과 그 분과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은 신고전과 경제학 합리적 선택모형에서의 영(0)의 거래비용 및 진공의 제도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고, 규범(예: 신뢰를 통한 자율적 협력준수 등의 비공식 제도) 및 공식적 제도(규칙)(예: 하도급 관련 법령)가 협력적 기업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Furubotn & Richter, 2005; 정용덕·김관보 외, 1999; Ostrom, 2005; Williamson, 1985).

하도급거래 조직은 시장거래와 계서제인 기업 내부생산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 간의 거래관계이다. 하도급거래 조직의 경제적 합리성을 규명하려는 측면에서 거래비용이론은 적절하나 계약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며 극단적인 경우 계약서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일부 업종의 한국식 하도급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박정구, 2005). 이 경우 계약서 체결과 계약이행에 높은 거래비용이 요구되고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한 하도급계약서 교부와 계약이행을 위한 기업 간 협력관계인 하도급거래를 구현하기 위해 하도급법과 같은 법률·제도 등 공식적 제도(규칙) 및 규범과 같은 비공식제도를 통한 기업 간 신뢰 구축을 중시하는 신제도론적 접근으로 거래비용이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Furubotn & Richter, 2005; 박정구, 2005).¹⁾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제조 및 수리, 건설, 용역/서비스)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여러 수급사업자들이 분담하는 기업 간 분업에 의한 생산방식이다. 하도급거래의 경제적 효과로는 비용절감, 위험분담, 품질제고, 기술개발의 성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1) 신제도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지며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 역사적 신제도론, 사회학적 신제도론 3가지로 분류된다(Hall & Taylor, 1996). 거래비용이론은 이러한 신제도론의 한 분과이다. 거래비용이론에서 하도급거래와 연계할 수 있는 핵심은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이다. 하도급거래는 이러한 장기적인 관계적 거래에서 신뢰와 협력으로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협력이 한국 하도급거래문화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제도론하의 규칙이 필요함을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하도급법 제2조).

(2) 하도급거래의 중요성

하도급거래는 대·중·소기업 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사업체수의 99%(318만 개), 고용의 87%(1,368만 명)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대기업 근로자 수는 48만 명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541만1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기술 혁신과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우리의 하도급거래 비중은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높으며 건설업, 제조 및 수리업 분야의 최종완제품은 대부분 하도급거래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박정구, 2005).

그러나 이러한 국민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 현장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생협력의 파트너가 아닌 원가절감을 위한 비용전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강요 행위나 구두발주 후 일방적인 위탁취소 등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그동안 하도급거래기업 간 신뢰구축을 통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하도급법제도 개선 및 자율적인 상생협력 구현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하도급거래 공정성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거래비용이론의 경우 기회주의(opportunism)가 중요한 설명변수지만, 신제도론은 기업 간 협력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신뢰(trust)가 중심적 개념이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정착될 경우 신제도론에서 주장하는 하도급거래 간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하도급거래기업 당사자들의 기회주의를 제약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하도급거래과정의 공정성과 결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상생의 결실을 분배하는 결과의 공정성을 가져올 것이다.

2. 하도급거래 공정성의 개념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학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범주화하고 그것을 하도급거래 공정성의 개념에 원용하고자 한다.

(1) 조직의 공정성: 절차적·분배적 공정성

행정학 분야에 있어 조직에서의 공정성이란 절차적 공정성(Thibaut & Walker, 1975), 분배적 공정성(Tyler & Bies, 1990)을 의미하며, 점차 이들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Moorman, 1991; Brockner & Wiesenfeld, 1996). 절차적 공정성은 주로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호작용 공정성으로까지 조직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즉 사람들이 결과 자체를 중요시하듯,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절차의 공정성도 중요하다(Thibaut & Walker, 1975).

(2) 인사의 공정성: 절차적·분배적·상호작용 공정성

일반적으로 인사공정성이란 조직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제도 및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지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인사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한 대우 및 처리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사공정은 일반적으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Colquitt et al., 2005; Conlon et al., 2005; Greenberg, 1990).

(3) 경영(민간) 조직의 공정성: 절차적·분배적·상호작용 공정성

경영학 분야 조직에서의 공정성은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으로 구분되며, 상호작용 공정성을 절차적 공정성과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다(Ambrose, Harland & Kulik, 1991). 첫 번째 관점은, 공정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수행한 일에 비추어 얻은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이다.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종업원들은 자신의 공헌도에 비추어 자신이 받은 보상(outcomes)

의 비율이 공정한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공정성 인식이 보상결정의 결과나 종업원 사이의 불충분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관리적 의사결정(managerial decision making)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 혹은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 공정성에 관한 분배적 관점과 절차적 관점에 더하여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의 관점이 소개되었다(Bies & Moag, 1986). 이는 절차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 개인이 받는 대인관계적 처우(interpersonal treatment)와 조직의 의사결정자가 제공하는 적절한 설명(adequacy of explanations)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 영국의 형평법하에서의 공정성: 절차적·분배적 공정성

한편 영국의 형평법에서도 공정성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형평법상의 공정성은 절차적 공정성, 실체적(분배적) 공정성으로 구분된다. 형평법은 1873년 이전에 영국의 형평법원이 개발하고 관리해 온 규칙(rules)과 원칙(principles) 및 구제수단들(remedies)의 총체이다. Worthington(2006)은 영국의 형평법에 초점을 두고 보통법과 형평법의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통합가능성을 모색하였다(임동진 역, 2009). 보통법(일반법)은 규칙과 권리에 기초한 체계인 반면 형평법은 양심에 기초하고 재량성이 강한 체계이다. 보통법이 계약에 대한 간섭에 주력한 반면, 형평법은 신탁과 여타의 신임관계에서의 간섭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두 법체계는 방조책임(accessory liabilities)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형평법 개입의 논리는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서면화된 계약이나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요식행위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형평법의 시정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계약의 요식을 갖추어야 필연적으로 그에 합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절차적 불공정성 차원에서 원고(예를 들면, 불리한 입장의 수급사업자)가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분명히 동의했느냐의 여부에 집중한다. 계약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그런 약속에 따르기로 약정하지 않은 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셋째, 실질적(분배적) 불공정성(substantive unfairness)의 문제와 관련하여 형평법은 거래의 조건(terms)이 불공정할 경우 개입한다.

(5)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 분류와의 연계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하면 크게 3가지 즉 절차적·과정적 공정성, 분배적·결과적(실체적) 공정성, 상호 작용적 공정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공정성을 당사자 간 거래란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거래를 하기 위한 계약체결단계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단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원용될 수 있다. 즉 “계약체결단계에서 그 절차가 공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한 “계약체결 후 그 이행 단계에서 절차 공정성 및 이행의 결과 최종 결과가 공정했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 상호작용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거래 공정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거래단계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범주의 공정성이 계약서 내용 실행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 가지 공정성 개념 분류는 하도급거래에 다음과 같은 논거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 하도급거래단계를 하도급거래 계약체결단계와 계약체결 후 이행단계, 그리고 거래과정의 상호작용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이러한 거래단계와 연계하여 하도급거래 계약체결단계에서는 절차(과정)의 공정성, 하도급거래이행단계에서는 이행과정의 공정성 및 이행 후 원·수급사업자 간에 분배되는 결과의 공정성, 끝으로 전 하도급거래단계에서 원·수급사업자 간의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하도급법은 당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1984년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하도급법(제1조)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는 하도급거래의 절차(과정)적 공정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배 결과의 공정성 및 상호작용 공정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절차적·과정적 공정성, 분배적·결과적(실체적) 공정성, 상호작용(상호협력) 공정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요약하면, 절차적(과정적)공정성은 하도급거래단계 공정성 중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와 연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은 하도급거래단계의 시작으로 계약체결의 공정성 정도에 따라 하도급거래이행 및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적(과정적) 및 분배적(결과적) 공정성은 하도급거래단계 공정성 중 하도급계약 이행단계와 연계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이행에는 하도급 목적물 기성·준공·납품·검사 단계 및 하도급대금 지급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하도급 목적물 기성·준공·납품·검사는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와 마찬가지로 절차적(과정적) 공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도급계약 이행에서 납품 및 검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근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도급계약 이행의 최종단계(물론 하자보수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본 공정성 항목에서는 제외됨)인 하도급대금 지급단계는 분배적·결과적(실체적) 공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을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하느냐의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계약 이행단계는 절차적 및 결과적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 공정성은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상호 과정에서 상생협력 공정성과 연계할 수 있다. 정부의 강한 규제접근보다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적자치의 원칙하에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당사자인 대중소기업(원·수급사업자) 간의 자율적·상호작용적인 상생협력(상호작용) 공정성 개념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판단된다.

〈표 1〉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성 개념

일반 공정성 분류	연계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성 분류	
절차적(과정적) 공정성	➔	하도급계약 체결 공정성	하도급거래단계 공정성
절차적(과정적) 및 분배적(결과적) 공정성	➔	하도급계약 이행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	대중소기업(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공정성	

다음 장에서 이러한 세 가지 하도급거래 공정성의 개념과 주요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체계로 구성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제시한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체계의 준거틀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안) 및 AHP 구조도의 설정

1.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성 평가항목 준거틀

앞에서 분석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에 근거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성할 평가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추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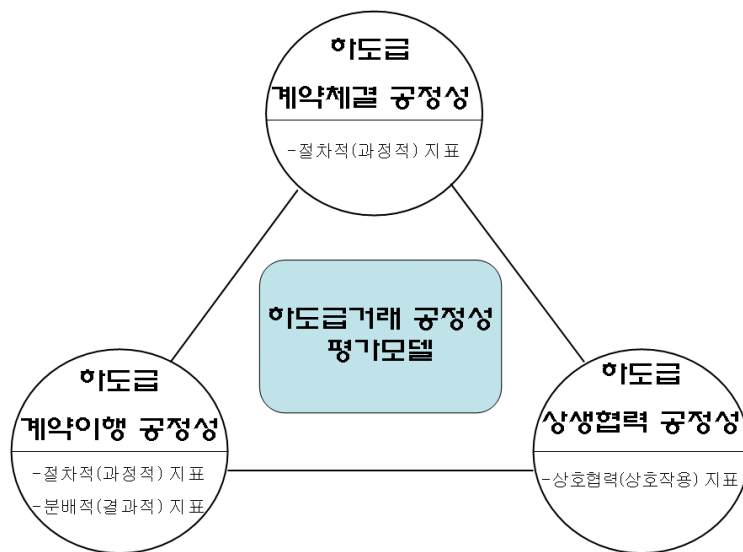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
-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례
- 건설산업기본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지표체계는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크게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하는 ① 절차적(과정적) 공정성 지표, 실제적·분배적 공정성을 의미하는 ② 분배적(결과적) 공정성 지표,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을 의미하는 ③ 상호협력 공정성 지표 등 세 가지 범주와 연계될 수 있다. 우선 절차적

(과정적) 공정성 지표는 앞장에서 논의된 하도급거래단계에서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및 하도급계약 이행단계의 공정성 평가에 적용된다. 또한 분배적(결과적) 지표는 하도급계약 이행단계의 공정성 평가에 적용된다. 끝으로 상호협력 공정성 지표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공정성 평가에 적용된다.

이를 종합하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 지표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지표체계



2. AHP 구조도의 설정

(1) AHP 기법 개요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들의 평가항목들 간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분석과정 혹은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적용한다.²⁾ AHP 기법은 Saaty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의사결정 방식으로서 OR(Operations Research)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계획과 자원배분, 갈등해소, 예측 등의 다양한 연구목적에 위해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적용분야도 공학, 경제·경영, 사회, 정치, 행정 등 다

2) AH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aty(1982)를 참고할 것.

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고길곤·하혜영, 2008). AHP는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는 의사결정방법론 중 하나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잡한 경우, 이를 계층(Hierarchy)화해, 주요 요인(상위 영역)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하위 영역)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직관적으로,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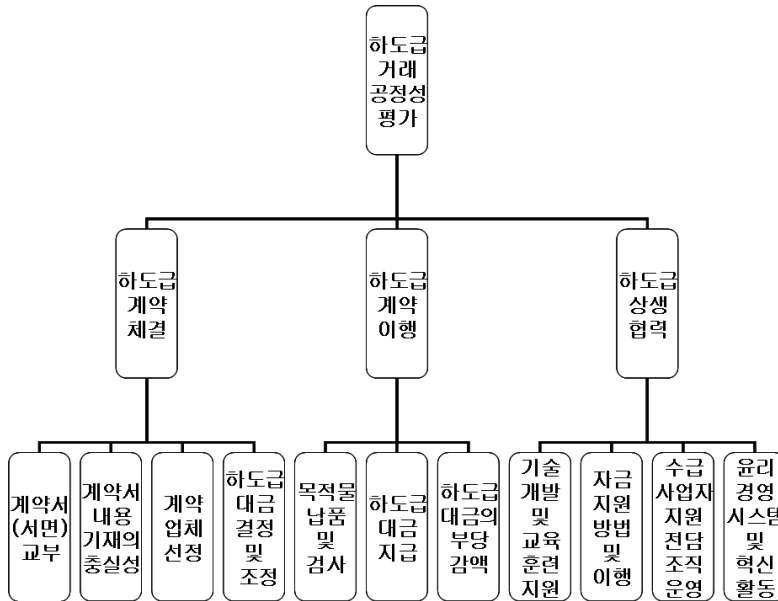
이러한 AHP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성적 혹은 무형적 기준(qualitative or intangible criteria)과 정량적 혹은 유형적 기준(quantitative or tangible criteria)을 비율 척도를 통하여 측정한다는 점, 둘째, 큰 문제를 점차 작은 요소로 분해함으로써 단순한 이원비교에 의한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셋째, 정보처리 면에서 의사결정자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두 요소만 이원비교를 하게 되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정량적인 정보 외에도 정성적, 직관적 정보도 비교할 수가 있다는 점 등이 있다(유용식·손호중, 2009: 459).

한편 AHP 기법의 신뢰성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이하 ‘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관성 비율(CR)은 각 평가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 개개인의 판단상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대체로 CR이 10%(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Saaty, 1982). 본 연구에서는 각 계층별 가중치의 일관성 비율(CR)이 모두 10%(0.1) 미만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AHP 구조도 설정

AHP 구조도를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구축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적용하여 도출한 상위 영역(평가항목), 하위 영역(평가지표)을 작성하였으며,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2009년 7월 2일, 2009년 7월 31일)를 개최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종 평가영역이 확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AHP 구조도를 작성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 AHP 구조도



또한 평가항목별 측정지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Ⅰ 하도급 계약체결	① 계약서(서면)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서(서면) 교부 여부(계약내용 변경, 추가 시 변경계약서 포함) ○ 하도급계약서(서면) 교부 시기
	② 계약서 내용 기재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조정요건, 하자보수 등)의 충실 정도 ○ 부대/특약조건 기재의 공정 여부 * (건설) 하도급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③ 계약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 업체 선정 시 입찰 방식 및 기준의 적정성 ○ 기준에 근거한 업체선정의 공정 여부
	④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사전 협의 후 대금결정 여부 ○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공정 여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② 하도급 계약이행	① 목적물 납품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시 합의된 목적물 납품(준공)기한 준수 여부 및 원사업자의 납기단축요구 및 그에 대한 보상, 납기연장 요청 및 수용의 공정 여부 ○ 계약 시 정한 목적물 납품검사(변경 시 사전합의 포함) 이행의 공정 여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사항 준수 여부(부당이익요구 금지 등 포함)
	② 하도급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법정기일기한의 지급 준수, 주기, 지급방법 및 내용 이행의 공정 여부[선금금(15일), 기성금 및 준공금(60일), 관세 환급액(15일), 하도급직불(합의 부분), 대물변제(금지)]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수령비율 이상) 현금 지급 및 현금성 결제수단 활용 여부
	③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납품단가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약정된 수량에 대한 단가 인하 적용 여부 ○ 약정된 수량 없이 단가 확정 후 단가 인하 여부
③ 하도급 상생협력	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개발지원, 공동개발, 신기술개발·이전, 특허지원,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예치제(escrow)' 활용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여부 ○ 교육훈련 지원 여부
	② 자금(금융)지원 방법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신기술/부품소재 개발 펀드조성 등 지원 규모 및 방법(직접/보증 등)에 대한 내용 충실 여부 ○ 지원의 이행 정도
	③ 수급사업자 지원전담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협력업무, 의견수렴 상담 등 수급사업자 지원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지원 전담부서의 실질적 운영 정도
	④ 상호간 윤리경영시스템 및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비도덕적 행위 방지를 위한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 원가절감에 의한 성과공유제 등의 혁신활동 정도

3. 조사 설계

AHP 구조도하의 가중치 조사를 위해 2009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면조사방법과 전자우편(e-mail)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배포된 45부 중 41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약 96%), 회수된 설문지 중 주요 변수의 누락 등 불성실한 응답이 발견되지 않아 41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방법에 의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경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실시함으로써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최영출, 2004: 36). 또한 전문가의 대상이 몇 명이 적정한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동진·박종화, 2006: 11). 다만 학자들 사이에 대체로 20부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하도급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구성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소의 연구위원, 협회 및 단체, 대학교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분야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원	협회 및 단체	대학교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계
총괄		12	3	-	-	1	-	-	16
건설업		-	-	4	4	-	2	-	10
제조·수리업		-	-	3	2	-	-	1	6
용역·서비스업		1	-	-	4	1	-	3	9
계		13	3	7	10	2	2	4	41

우선, 소속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 포함)의 하도급담당 공무원 13명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구성원 3명(변호사 1인 포함), 연구원 7명, 협회 및 단체 10명, 대학교수 2명, 원사업자 2명, 수급사업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분야를 살펴보면

하도급 총괄부문이 16명, 건설업이 10명, 제조·수리업이 6명, 용역·서비스업이 9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나타날 수 있는 극단값(bias)을 중화하기 위해 총괄담당을 각 분야에 합산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즉 건설업의 경우 ‘총괄 16명 + 건설 10명’, 제조·수리업의 경우 ‘총괄 16명 + 제조·수리업 6명’,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총괄 16명 + 용역·서비스업 9명’으로 계산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Microsoft사의 Excel 200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AHP 분석결과 및 하도급거래 공정성 지수 산정

1. AHP 분석결과

(1) 상위 수준의 분석결과

상위 수준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째,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0.512)’ → ‘하도급계약 체결(0.341)’ → ‘하도급 상생협력(0.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수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0.436)’ → ‘하도급계약 체결(0.396)’ → ‘하도급 상생협력(0.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0.416)’ → ‘하도급계약 이행(0.405)’ → ‘하도급 상생협력(0.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 업종을 모두 합산했을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0.493)’ → ‘하도급계약 체결(0.351)’ → ‘하도급 상생협력(0.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은 하도급계약 이행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은 계약체결 후 이행단계에서 대금지급의 불공정성(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및 부당(납품) 단가 인하 등이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실제 제1~2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시에도 용역·서비스업은 타 업종에 비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다. 또한 하도급 상생협력은 모든 업종에서 3순위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문화보다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상생협력을 위한 원사업자의 인프라가 미흡함은 물론 공정위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기간의 일천한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4〉 상위 수준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설문대상		상위 수준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계약 이행	하도급 상생협력	CR
		중요도	(우선순위)				
전체		중요도	(우선순위)	0.351 (2)	0.493 (1)	0.156 (3)	0.01
	건설업	중요도	(우선순위)	0.341 (2)	0.512 (1)	0.147 (3)	0.03
	제조·수리업	중요도	(우선순위)	0.396 (2)	0.436 (1)	0.168 (3)	0.01
	용역·서비스업	중요도	(우선순위)	0.416 (1)	0.405 (2)	0.179 (3)	0.00

(2) 하위 수준의 분석결과

1)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계약 체결의 하위 수준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째,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0.331)’ → ‘계약서 교부(0.255)’ → ‘계약서 내용기재의 충실성(0.220)’ → ‘계약업체 선정(0.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수리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0.329)’ → ‘계약서 교부(0.288)’ → ‘계약서 내용기재의 충실성(0.216)’ → ‘계약업체 선정(0.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0.326)’ → ‘계약업체 선정(0.251)’ → ‘계약서 교부(0.236)’ → ‘계약서 내용기재의 충실성(0.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 업종을 모두 합산했을 경우,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0.337)’ → ‘계약업체 선정(0.247)’ → ‘계약서 내용기재의 충실성(0.209)’ → ‘계약서 교부(0.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하도급계약 체결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설문대상		하도급계약 체결	계약서(서면) 교부	계약서 내용 기재의 충실성	계약업체 선정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	CR
전체	중요도 (우선순위)	0.207 (4)	0.209 (3)	0.247 (2)	0.337 (1)	0.01	
	건설업	0.255 (2)	0.220 (3)	0.193 (4)	0.331 (1)	0.01	
	제조·수리업	0.288 (2)	0.216 (3)	0.167 (4)	0.329 (1)	0.04	
	용역·서비스업	0.236 (3)	0.186 (4)	0.251 (2)	0.326 (1)	0.02	

분석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은 모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경우 중요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선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계약업체 선정이 2순위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결과는 용역·서비스업은 업체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 등을 실시하는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데에서 기인한다.

2) 하도급계약 이행

하도급계약 이행의 하위 수준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째,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0.563)’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0.299)’ → ‘목적물 납품 및 검사(0.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수리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0.500)’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0.373)’ → ‘목적물 납품 및 검사(0.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0.504)’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0.359)’ → ‘목적물 납품 및 검사(0.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 업종을 모두 합산했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0.523)’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0.334)’ → ‘목적물 납품 및 검사(0.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모든 업종에서 중요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은 모든 업종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6〉 하도급계약 이행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설문대상 \ 하도급계약 이행		목적물 납품 및 검사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CR
전체	중요도 (우선순위)	0.142 (3)	0.523 (1)	0.334 (2)	0.00
건설업	중요도 (우선순위)	0.138 (3)	0.563 (1)	0.299 (2)	0.01
제조·수리업	중요도 (우선순위)	0.128 (3)	0.500 (1)	0.373 (2)	0.00
용역·서비스업	중요도 (우선순위)	0.138 (3)	0.504 (1)	0.359 (2)	0.02

3) 하도급 상생협력

하도급 상생협력의 하위 수준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째, 건설업의 경우, ‘자금지원방법 및 이행(0.338)’ →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0.282)’ → ‘상호간 윤리경영시스템 및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0.228)’ → ‘수급사업자 지원전담조직 운영(0.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수리업의 경우,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0.372)’ → ‘자금지원방법 및 이행(0.264)’ → ‘상호간 윤리경영시스템 및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0.219)’ → ‘수급사업자 지원전담조직 운영(0.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자금지원방법 및 이행(0.384)’ →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0.268)’ → ‘상호간 윤리경영시스템 및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0.182)’ → ‘수급사업자 지원전담조직 운영(0.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 업종을 모두 합산했을 경우, ‘자금지원방법 및 이행(0.362)’ →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0.276)’ → ‘상호간 윤리경영시스템 및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0.218)’ → ‘수급사업자 지원전담조직 운영(0.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건설업과 용역·서비스업은 자금지원방법 및 이행을 1순위로 보았으나, 제조·수리업의 경우 자금지원보다는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 업종과 달리 제조·수리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자생력 증진 및 거래비용 절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하도급 상생협력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설문대상		하도급 상생협력				CR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자금(금융) 지원 방법 및 이행	수급사업자 지원전담조직 운영	상호간 윤리경영시스템 및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을 위한 혁신활동		
전체	중요도 (우선순위)	0.276 (2)	0.362 (1)	0.145 (4)	0.218 (3)	0.02	
	건설업	중요도 (우선순위)	0.282 (2)	0.338 (1)	0.152 (4)	0.228 (3)	0.03
	제조·수리업	중요도 (우선순위)	0.372 (1)	0.264 (2)	0.145 (4)	0.219 (3)	0.02
	용역·서비스업	중요도 (우선순위)	0.268 (2)	0.384 (1)	0.166 (4)	0.182 (3)	0.01

(3) 전체 평가영역에 대한 종합 가중치

모든 하위 수준 간의 업종별 종합 중요도 및 전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러한 업종별 종합분석은 각 평가영역의 하위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종합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평가항목을 통합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는 모든 업종이 가중치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과 관계된 부분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밝혀졌다. 이 밖의 순위는 업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종합가중치 및 전체 우선순위

설문대상 전체 평가 영역		전 체	건설업	제조·수리업	용역·서비스업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하도급계약 체결	계약서(서면) 교부	0.073 (6)	0.087 (4)	0.114 (4)	0.098 (5)
	계약서 내용 기재의 충실성	0.073 (5)	0.075 (5)	0.086 (5)	0.077 (6)
	계약업체 선정	0.087 (4)	0.066 (7)	0.066 (6)	0.104 (4)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	0.118 (3)	0.113 (3)	0.130 (3)	0.136 (3)
하도급계약 이행	목적물 납품 및 검사	0.070 (7)	0.071 (6)	0.056 (8)	0.056 (8)
	하도급대금 지급	0.258 (1)	0.288 (1)	0.218 (1)	0.204 (1)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납품단가인하)	0.165 (2)	0.153 (2)	0.163 (2)	0.145 (2)
하도급상생협력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0.043 (9)	0.041 (9)	0.062 (7)	0.048 (9)
	자금(금융)지원 방법 및 이행	0.056 (8)	0.050 (8)	0.044 (9)	0.069 (7)
	수급사업자 지원전담조직 운영	0.023 (11)	0.022 (11)	0.024 (11)	0.030 (11)
	상호간 윤리경영시스템 및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	0.034 (10)	0.034 (10)	0.037 (10)	0.033 (10)

2. 하도급거래 공정성 지수 산정

(1) 공정성 지수 산정 절차

하도급거래 공정성 지수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평가 모델의 각 세부 측정지표에 대한 점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세부 측정지표에 대

한 점수 산정은 AHP 기법을 적용한 점수 산정방법을 이미 적용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지속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당 2~3개씩 배정된 세부 측정지표의 점수 비율을 50%, 50%(2개일 경우)로 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평가 모델의 각 세부 측정지표에 대한 평균값(\bar{X})을 산정한다. 세부 측정지표인 a1, a2를 앞에서 제안한 비대로 50%, 50%의 점수 비율로 산정하고, 이의 평균점수를 계산한다. 셋째, AHP에 의해 산출된 가중치(w)를 통해 평가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Sectoral Fairness Index)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종합지수(CFI: Composite Fairness Index)를 산정한다.

$$SFI = \sum_{i=1}^n w_i \bar{X}_i (\bar{X} \text{는 세부 지표 평균 값}) \rightarrow 100 \text{점을 기준으로 값을 환산}$$

$$CFI = \sum_{j=1}^n w_j SFI_j (SFI \text{는 부문별 공정성 지수})$$

(2) 공정성 지수 산정 예시: 건설업의 경우

본 예시에서는 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산정방법은 생략하고, 공정성 종합지수(CFI)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첫째, 각 세부 측정지표에 대한 점수를 배정한다. ‘하도급계약 체결’의 ‘계약서 교부’의 경우 세부 측정지표로 ‘하도급계약서(서면) 교부 여부’와 ‘하도급계약서(서면) 교부시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도급계약서(서면) 교부 여부’를 50%, ‘하도급계약서(서면) 교부시기’를 50%로 배정한다.

둘째, 각 세부 측정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산정한다. 앞선 두 세부 측정지표 [‘하도급계약서(서면) 교부 여부’, ‘하도급계약서(서면) 교부시기’]의 점수가 각각 5점, 5점으로 나타난다(Likert 척도 7점). 따라서 총 10점을 획득하였고, 평균값은 5점이다. 이를 1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7.14점이다.

셋째, AHP에 의해 산출된 가중치(w)를 통해 평가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Sectoral Fairness Index)를 산정한다. 이미 AHP 설문결과를 통해 도출된 ‘하도급계약 체결(0.341)’과 ‘하도급계약 체결’의 하위 네 가지 수준 중 하나인 ‘계약서 교부(0.255)’의 가중치를 곱하여 0.087의 종합가중치를 산정한다. 따라서 도출된 최종가중치 0.087(100점 대비 8.7점)과 그 세부 측정지표의 평균값 7.14점을 곱한다. 이렇게 하여 ‘계약서 교부’의 경우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6.21점이 된다.

$$\frac{x}{8.7} = \frac{7.14}{10} \quad (w=8.7, \text{ Likert scale}=10, m=7.14)$$

$$x = 6.21$$

$$*m=(a1 \times 50\% + a2 \times 50\%)$$

마지막으로, 공정성 종합지수(CFI: Composite Fairness Index)를 산정한다. 다음의 <표 9>에서 예시된 것과 같이 건설업의 공정성 종합지수는 86.1점이 된다.

<표 9> 공정성 종합지수(CFI) 산정 예시(건설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SFI ₁	계약서 교부, w=8.7 * $\bar{X}_1 = 6.21$	a1(교부 여부)=5 , a2(교부시기)=5 * $\bar{a} = 5$
	$\bar{X}_2 = 6.43$	b1 , b2 $\bar{b} = 6$
	$\bar{X}_3 = 6.6$	c1 , c2 $\bar{c} = 7$
	$\bar{X}_4 = 8.07$	d1 , d2 $\bar{d} = 5$
SFI ₂	$\bar{X}_5 = 6.09$	e1 , e2 $\bar{e} = 6$
	$\bar{X}_6 = 28.8$	f1 , f2 $\bar{f} = 7$
	$\bar{X}_7 = 10.9$	g1 , g2 $\bar{g} = 5$
SFI ₃	$\bar{X}_8 = 3.51$	h1 , h2 $\bar{h} = 6$
	$\bar{X}_9 = 5$	i1 , i2 $\bar{i} = 7$
	$\bar{X}_{10} = 1.57$	j1 , j2 $\bar{j} = 5$
	$\bar{X}_{11} = 2.91$	k1 , k2 $\bar{k} = 6$
CFI	86.1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본 연구는 수직적·종속적 거래의 특성을 지닌 하도급거래 공정성의 추세를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개발하고 AHP 기법을 적용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공정성 개념의 고찰하에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정립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을 크게 절차적·과정적 공정성, 분배적·결과적(실체적) 공정성, 상호작용(상호협력) 공정성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이러한 하도급거래 공정성개념의 분류하에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성할 평가부문(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를 연계하였다. 절차적(과정적) 공정성은 하도급거래 단계 공정성 중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와 연계할 수 있고, 절차적(과정적) 및 분배적(결과적) 공정성은 하도급거래단계 공정성 중 하도급계약 이행단계와 연계할 수 있다. 즉 하도급계약 이행에는 하도급 목적물 기성·준공·납품·검사 단계 및 하도급대금 지급단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하도급 목적물 기성·준공·납품·검사는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와 마찬가지로 절차적(과정적) 공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계약 이행의 최종단계(물론 하자보수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본 공정성 항목에서는 제외됨)인 하도급대금 지급단계는 분배적·결과적(실체적) 공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상호작용 공정성은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상호과정에서 상생협력 공정성과 연계할 수 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안)을 도출한 후 평가틀에 포함된 평가부문(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도 조사를 위해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은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 평가지표 및 22개의 세부 측정지표를 담고 있다. 3개 평가항목은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 공정성,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공정성, 하도급 상생협력 공정성으로 분류되며,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에는 서면 계약서 교부, 계약서 내용기재의 충실

성, 계약업체 선정,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 등 4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된다. 하도급계약 이행단계에는 목적물 납품 및 검사(위탁취소, 반품 포함),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납품단가 인하) 등 3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된다. 끝으로 하도급 상생협력 공정성에는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금융(자금) 지원 방법 및 이행, 수급사업자 지원전담조직 운영, 상호간 윤리경영시스템 및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활동(성과공유제) 등 4가지 평가지표가 포함된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3가지 평가항목과 11개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조사하기 위해 AHP를 실시한 결과 먼저, AHP 1차 수준인 평가항목 간의 비교에서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은 하도급계약 이행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 상생협력은 모든 업종에서 3순위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문화보다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상생협력을 위한 원사업자의 인프라가 미흡함은 물론 공정위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기간의 일천한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지표 간의 비교분석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은 모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경우 중요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선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계약업체 선정이 2순위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하도급계약 이행단계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중요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선순위가 동일하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은 모든 업종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하도급 상생협력 공정성 평가지표에서는 건설업과 용역·서비스업은 자금지원방법 및 이행을 1순위로 보았으나, 제조·수리업의 경우 자금지원보다는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가중치 및 전체 우선순위 분석 결과, 1순위에서 3순위까지(하도급대금 지급→부당감액→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는 모든 업종이 가중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순위이다. 또한 타 순위는 업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적용하기 위한 부문별 공정성 지수 및 하도급거래

종합공정지수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AHP에 의해 산출된 가중치(w)를 통해 평가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Sectoral Fairness Index)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공정성 지수(CFI: Composite Fairness Index)를 산정하였다.

2. 향후 과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모색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 하도급거래 당사자인 대중소기업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페널티 차원의 공정성 조사가 아닌 긍정적인 인센티브 차원의 조사임을 강조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시행을 통한 주기적인 모델 구성 항목 및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대상의 적절한 선택으로 업종별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기획총괄 및 시행 주관기관은(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할 연구기관의 조사팀을 대상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가중치 조사결과, 지수 산정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최종 설문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고길곤·하혜영,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Vol.17 No.1, 2008, pp.287-312.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2008a.
- 공정거래위원회, 『2008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8b.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09/2008/2007/2006.
- 김동진·박종화, 「도시문화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 『한국행정논집』 Vol.18 No.1, 2006, pp.311-333.
- 박정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5.
- 이성근·윤민석, 『AHP 기법을 이용한 마케팅의사결정』, 석정, 1994.
- 이재은, 『AHP 기법의 소개와 사례 적용: 논리 일관성과 분석 계층을 통해 본 유용성과 한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 임동진(역), 『형평법』, 소화, 2009.
- 유용식·손호중, 『다문화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36 No.2, 2009, pp.447-470.
- 정용덕·김관보 외,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 조근태·조용곤·강현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3.
- 최영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AHP 방법론의 적용』, 『지방행정연구』 Vol.18 No.1, 2004, pp.19-51.
- Ambrose, M. L., Harland, L. K., & C. T. Kulik, "Influence of social comparisons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fair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1991, pp.239-246.
- Bies, Robert J. and Joseph S. Moag, "Interactional Justice: Communication Criteria of Fairness," *Research on Negotiation in Organizations* 1, 1986, pp.289-319.
- Brockner, J. & B. M. Wiesenfeld,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Explaining Reactions to a Decision: The Interactive Effects of Outcomes and Procedures," *Psychological*

- Bulletin* 120, 1996, pp.189-208.
- Colquitt, J. A., Greenberg, J., & C. P. Zapata-Phelan, "What is organizational justice? A historical review," In Colquitt, J. A., & J. Greenberg (ed.), *Handbook of Organizational Justi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5, pp.3-56.
- Conlon, D. E., Meyer, C. J., & J. M. Nowakowski, "How does organizational justice affect performance, withdrawal, and counterproductive behavior?," In Colquitt, J. A., & J. Greenberg (ed.), *Handbook of Organizational Justi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5, pp.301-328.
- Furubotn, Eirik & Rudolf Richter, *Institutions and Economic Theor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 Greenberg, J., "Employee theft as a reaction to underpayment inequity: The hidden cost of pay cu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990, pp.561-568.
- Hall, Peter & Rosemary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XLIV, 1996, pp.936-957.
- Moorman, R. H.,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Do Fairness Perceptions Influence Employee Citize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1991, pp.845-855.
- Ostrom, Elinor,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and Lond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Saaty, Thomas. L., *Decision Making For Leader: The AHP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CA: Wadsworth, 1982.
- Thibaut, J. & L. Walker,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Hillsdale, NJ: Erlbaum, 1975.
- Tyler, T. & R. J. Bies, "Beyond Formal Procedures: The Interpersonal Context of Procedural Justice," In J. Carroll (ed.), *Applied Soci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Settings*, Hillsdale, NJ: Erlbaum, 1990, pp.77-98.
-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 Institute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1985.
- Worthington, Sarah., *Equ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A Preliminary Study for Constructing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pplication of AHP Method

Kwanbo Kim, Myeong-Soo Kim and Kyungjin Cha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truct the sustainabl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calculate its fairness indices for evaluat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First, the fairness concept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or constructing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1) procedural fairness, 2) result (outcome) fairness, and 3) mutual interaction (win-win cooperation) fairness. Second, both evaluation sectors (items) and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are drawn from the subcontracting-related laws and win-win (cooperation) agreement and are linked to the concept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fairness. Third, based on these finding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is conducted to explore the degree of mutual importance and weight of evaluation sectors and their indicators. Finally,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s created. The system includes three evaluation sectors: subcontracting contract conclusion,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and subcontracting win-win cooperation. Also the system has 11 evaluation indicators and 22 detailed measurement indicators. The primary level analysis result of AHP has shown that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the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repair industries, while subcontracting contract conclusion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service industries.

The secondary level analysis result of AHP with 11 evaluation indicators has demonstrated that subcontracting price decision and adjustment in the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i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across all industries. The comprehensive weight and overall ranking results of all evaluation indicators have represented that subcontracting price payment is first, unfair subcontracting price reduction is second, and subcontracting decision and adjustment is third in all industries. The sectoral fairness index (SFI) and the composite fairness index (CFI) are calculated to apply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Key words: Fairness,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HP, Fairness Index, Win-Win Cooperation